

영등포구의회
제 195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6. 2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50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 결격사유 변경(안 제22조제1호~제2호)

-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청소년의 달)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신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6. 4. 7 ~ 4. 27)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청소년지도협회의 지도위원이 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용어가 변경되어 개정된 민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획일적으로 능력을 제한하는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 제22조 청소년지도협회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의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생활 지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전문개정 2014.3.24.]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